

종교수업과 관련된 법적 근거들에 대한 논의
- 스위스,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Die rechtliche Begründungsproblematik
des Religionsunterrichts)

강 용 원*

— 목 차 —

I. 서 론

II. 스 위 스

1. 법적상황
2. 종교수업의 다양성
3. 대표적인 세 칸톤의 예

III. 독 일

1. 법적상황
2. 종교수업의 양면성
3. “종교단체의 기본원리들”
4. 종교수업과 국가의 중립성
5. 대표적인 세 지방정부의 예

IV. 결 론

참고도서목록

* 교수(기독교교육과), 실천신학전공

I. 서론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럽의 몇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공립학교에서 종교수업이 필수과목으로 교수되어 왔으며, 현재도 교수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규정에 의해서, 학생(부모)에게는 그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허락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수업의 문제는 언제나 법적으로 큰 논쟁점을 안고 있다. 연구자는 스위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교육과 종교가 어떻게 연관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기독교계통의 학교들에서 행해지는 종교수업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비교, 검토, 해명해 나가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립학교의 교과과정 속에서도 종교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적으로 문헌연구에 의존할 것이다. 다루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스위스와 독일에서의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수업에 관한 법적 상황을 묘사하고 비교하며, 그 의미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 나라들은 지방자치가 발달하였으므로, 몇 개의 주(지방정부 : Land, Kanton)를 실례로 들어서 제시할 것이다.

II. 스위스

1. 법적상황

지방자치 제도가 발달한 스위스에서는 학교제도 역시 각각의 지방정부(Kanton : 이하 '칸톤'이라 부름)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런 관계로 스위스 내에는 다양한 학교제도와, 교회와 국가 그리고 학교와 종교수업 사이의 다양한 관계규정이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¹⁾ 스위스의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수업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된다. 그러므로 스위스에서 행해지는 학교에서의 종교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²⁾

- 1)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각 칸톤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 2) 헌법에 의하면, 학교제도는 각 칸톤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
- 3) 종교수업에 관한 각 칸톤의 법적인 상황이나 실천에 관한 철저한 연구나 조직적인

(1) K. Wegenast, Der Religionsunterricht in der Schweiz, in : Religionspädagogische Beiträge, 9 (1982), 124; H. Eggenberger, Religionsunterricht in der Schweiz, in : Der Evangelische Erzieher, 1975, 427; 현재 스위스에는 26개의 칸톤이 있는데, 이 중에서 6개는 3개의 칸톤이 반으로 갈라져서 된 것으로 반 칸톤이라고 부른다. 엄밀히 말한다면 스위스에는 26종류의 학교제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2) Vgl. K. Wegenast, a.a.O., 124f; H. Eggenberger, a.a.O., 425f.

묘사가 부족하다.⁽³⁾

- 4) 법률상의 근거와 규정, 교수계획과 실제적인 종교수업의 실천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
- 5) 이 나라의 다언어 현상은⁽⁴⁾ 각 지역별로 상이한 교육적이며 신학적인 사고의 전통을 가져다 주었다.

1874년의 헌법에 의하면 "연방의 법은 칸톤의 법을 지배한다"는 원리가 관철되었다. 이런 이유로 헌법은 학교의 종교수업을 위한 보장과 일반적인 태두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수업과 관련된 제반 규정들은 각 칸톤에 일임하고 있다.⁽⁵⁾ 공립학교의 종교수업과 관련된 중요한 헌법의 규정은 제27조 3항과 제49조 1항에서 3항 사이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제27조 3항 : "모든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됨이 없이 공립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
- 제49조 1항 :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침해되지 않는다."
- 제49조 2항 : "어느 누구도 종교단체의 참여나 종교적인 수업 혹은 종교적인 행위를 강요받을 수 없으며 신앙의 관점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형벌도 받지 않는다."
- 제49조 3항 : "16세 이전의 어린이의 종교교육은 전술한 원리의 의미에서 부모나 교육친권자의 권한 하에 있다."

스위스에 있어서 공립학교의 종교수업은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칸톤에서 정규과목으로 되어 있으나 헌법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각 칸톤은 학교 안에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공립학교의 수업은 모든 종파의 신자나 혹은 비신자라도 그들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손상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칸톤은 원칙적으로 어떤 의무적인 종교수업을 도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⁶⁾ 이와 같은 방향에서 제49조 2항이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런 결과로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수업은 정규과목이면서도 교육친권자는 그 수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⁷⁾

2. 종교수업의 다양성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학교나 교육에 관한 사항은 연방에 속한 것이 아니고 각 칸톤의 사항이기 때문에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규정이 학교라는 영역에서 각 칸톤별로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음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⁸⁾ 어떤 칸톤들은 학교의 기독교성(Christlichkeit)을 강조하는 반면에(예를 들면 칸톤 Bern, Zug 그리고 Appenzell-*innerrhoden*

(3) W. K. Bräm, Religionsunterricht als Rechtsproblem im Rahme der Ordnung von Kirche und Staat, Zürich 1978; W. Gysel, Zur Situation des evangelischen Religionsunterrichts im Kanton Zürich, Zürich 1968; 이 글 중에서 1978년 쾰리히 대학에 학위논문으로 제출된 W. K. Bräm의 "교회와 국가의 질서 속에서의 법적 문제로서의 종교수업"은 이 문제에 관한 유용한 논문으로 각 칸톤 별로 종교수업의 현황과 법적 근거를 잘 묘사해 주고 있다.

(4) 스위스에는 현재 지역별로 독일어, 불어, 이태리어 등 4개의 공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5) K. Wegenast, a.a.O., 126.

(6) K. Wegenast, a.a.O., 127.

(7) 이 거부권은 16세 이하의 어린이인 경우에는 부모나 교육친권자의 권한에 속해 있다. 또한 교사 역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수업을 강요받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신, 구교를 통합하는 교과과정 혹은 중립적인 "종교학" 수업으로서의 종교수업 모델을 개발해 나가기도 한다.

(8) K. Wegenast, a.a.O., 127.

등), 다른 칸톤들은 의식적으로 종교에 대해 중립적인 학교를 강조하고 종교수업을 다른 수업들과 엄밀하게 분리하기도 한다(칸톤 Genf, Neuenberg 등).⁽⁹⁾ 또한 칸톤 Freiburg과 Wallis에서는 가톨릭적인 공립학교 외에 국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개신교 계통의 사립학교들이 있기도 하다. 이것은 종파적인 소수인을 고려하는 합당한 제도로 보여진다. 다양한 칸톤들의 종교수업은 종교수업의 책임소재가 교회에 있느냐 혹은 국가에 있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다음 세 가지 형태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로 엑젠베르거(H. Eggenberger)와 베게나스트(K. Wegenast)의 구분을 따른 것이다.⁽¹⁰⁾

- 1) 신, 구교 분리하여 실시되는 종교수업으로, 학교라는 공간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학교는 그 책임이 없으며 또한 학교에 소속된 교사진에 의해서도 가르쳐지지 않는다. 이 경우, 학교법에서는 종교수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던지, 혹은 언급하기는 해도, 분명한 학교의 교수구조로부터 구분되어서 언급한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 형태는 교회가 종교수업을 주도하고 책임을 지며, 단지 학교의 장소만을 빌린다는 의미이다. 칸톤 Genf와 Basel-Stadt가 여기에 속한다.⁽¹¹⁾
- 2) 신, 구교 분리하여 실시되는 종교수업으로,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 속에서 실시되며, 동시에 교회의 책임과 지도 아래서 실시된다. 이 경우에 종교수업은 교회의 책임 영역에 속한다. 동시에 이 과목은 교과과정 속에 나타나며, 의무적인 수업과목으로 간주된다. 칸톤 St. Gallen, Graubünden이 여기에 속하며, 유사한 형태로는 칸톤 Freiburg, Luzern, Schwyz, Solothurn, Uri 그리고 Wallis 등이 있다.
- 3) 종파를 초월하는 중립적인 종교수업으로, 학교고유의 책임으로 실시되는 종교수업의 형태로 이 경우에 종교수업은 국가와 학교의 책임영역에 속한다. 칸톤 Bern, Zürich가 여기에 속하며, 유사한 모습이 칸톤 Aargau, Glarus, Thurgau, Schaffhausen, 그리고 Waat에서 보인다.

신교, 구교라는 종파의 관점에서 보면 스위스의 종교수업은 다음의 세 가지로 그 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 즉 종파적 교육(신, 구교 분리), 에큐메니칼적 교육(신, 구교 통합), 그리고 중립적(초종파적) 교육이다.⁽¹²⁾

- 1) 신, 구교가 그 종교수업을 분리하여 하는 형태로 어린이들은 자기의 종파에 따라 분리되어서 수업을 받는다. 이런 형태는 무엇보다도 가톨릭이 강한 칸톤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칸톤 Luzern, Schwyz, Wallis 등에서 볼 수 있다.
- 2) 에큐메니칼 종교수업은 신, 구교의 공동작업으로 생겨진 것이다. 공동으로 작업된 교수계획 속에서, 목표와 내용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교재가 결정된다. 그리고 종교수업을 위한 교사의 양성도 신, 구교 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형태의 종교수업은 구교가 강한 칸톤이나 혹은 신, 구교가 거의 대등한 칸톤에서 이루어진다(칸톤 Freiburg, St. Gallen, Zug 등). 구교에 속한 어린이들은 이 종교수업 외에 구교적인 종교수업을 1주일에 한 두 시간씩 받는다.
- 3) 중립적이거나 국가적인 종교수업은 주로 신교가 강한 칸톤에서(Bern, Zürich) 행해진다. 이 때에 종교수업의 책임은 학교나 국가에 있으며(교회는 자문 역할을 하고) 신, 구교에 속한 모든 어린이에게 이 수업이 제공된다. 많은 곳에서 구교에 속한

어린이는 이 수업에서 면제되고 대신에 주로 학교 밖의 장소(혹 교회)에서 실시되는 구교의 종교수업에 참여한다.

3. 대표적인 세 칸톤의 예

이와 관련하여 스위스의 종교수업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독일어를 쓰는 몇개의 칸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각각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1) 칸톤 바젤-도시(Basel-Stadt)

칸톤 Basel-Stadt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 그리고 종교수업과 학교의 분리현상이 뚜렷하다. 학교법 제77조에 의하면 종교수업은 종교단체의 관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¹³⁾ 즉 교회의 책임 아래 종교수업이 진행되는데 1주 1~2시간의 정규시간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학교는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되 그 책임은 지지 않는다.⁽¹⁴⁾ 신교에 속한 아동들은 1학년에서 7학년까지 학교교사나 혹은 교회의 성경교사(Katecheten)에 의해 수업을 받는다. 반면에 구교측에서는 1학년과, 7학년에서 9학년까지는 주당 1시간,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주당 2시간의 종교수업을 학교수업시간에 실시한다.⁽¹⁵⁾ 그리고 모든 종교수업의 비용은 교회가 부담한다.⁽¹⁶⁾

2) 칸톤 상트 갈렌(St. Gallen)

칸톤 St. Gallen에서 종교수업은 교회의 책임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이 과목은 학교의 교수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¹⁷⁾ 칸톤법 3조 3항에 의하면 종교수업은 “해당되는 종파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기관에 의해 실시된다. 이 수업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며 교수계획 속에서 적합한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¹⁸⁾ 일반적으로 칸톤 St. Gallen은 신교 어린이인 경우에는 각 교구에 따라 1학년부터나 혹은 4학년부터 주당 2시간씩 학급교사에 의해 수업을 받으며, 고학년(7~9학년)은 보통 목사나 교회의 교육받은 성경교사에 의해 수업을 받는다. 구교 어린이(1~6학년)는 보통 1시간은 담임교사에 의해 성경수업을, 나머지 한 시간은 신부나 혹은 보조 성경교사 등에 의한 종교수업을 받는다.⁽¹⁹⁾ 종교수업의 비용은 칸톤이 부담한다.⁽²⁰⁾ 최근에 이 곳에서는 종교수업을 신, 구교 연합적인 성격으로 개편할 것을 시도하고 있는데,⁽²¹⁾ 조직적인 면에서 본다면 1주일에 한시간은 신, 구교 연합적인 종교수업을 받고, 나머지 1시간은 종파적인(신, 구교 분리) 종교수업을 받게 되는 형태이다.⁽²²⁾

(13) Siehe F. Dommann, Religionsunterricht in der Schweiz und schweizerische Lehrmittel, in: Religionspädagogische Beiträge, 18 (1986), 137f.

(14) W. K. Bräm, a.a.O., 136.

(15) K. Wegenast, a.a.O., 130.

(16) Ebenda.

(17) H. Eggenberger, a.a.O., 428f.

(18) W. K. Bräm, a.a.O., 211.

(19) H. Eggenberger, a.a.O., 429.

(20) K. Wegenast, a.a.O., 130.

(21) F. Dommann, a.a.O., 138.

(22) K. Wegenast, a.a.O., 130.

(9) 칸톤 Genf는 제네바를 독일어 사용권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다.

(10) Vgl. K. Wegenast, a.a.O., 128; H. Eggenberger, a.a.O., 427f.

(11) 칸톤 Basel은 도시 바젤과 농촌 바젤, 즉 Basel-Stadt와 Basel-Land로 나뉘어져 있음.

(12) Vgl. K. Wegenast, a.a.O., 128ff; H. Eggenberger, a.a.O., 428ff.

3) 칸톤 쥐리히(Zürich)

칸톤 쥐리히에서는 1889년의 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1주일에 2시간씩 “성경 이야기와 윤리(Biblische Geschichte und Sittenlehre)”라는 이름으로 초종파적인 종교수업이 실시되어 왔다. 이 규정의 제26조에 보면 “‘성경이야기와 윤리’의 수업은 처음 6년동안 교사에 의해 실시되며, 다양한 종파의 아동들이 그들의 양심의 자유에 침해됨이 없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1975년부터는 새로운 규정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성경 이야기”와 “Lebenskunde”의 두 과목으로 나뉘어졌다.⁽²³⁾ 이 수업 역시 종파중립적으로 실시되며, 각 과목은 주당 1시간씩이다. “성경이야기” 과목은(가톨릭 어린이에게도 마찬가지) 요구에 의해서 면제될 수 있으나, “Lebenskunde”는 필수이다. 또한 교사 역시 “성경이야기” 과목은 원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다.⁽²⁴⁾

그후 근년에 다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989년 3월 14일의 칸톤 쥐리히의 교회회의는 새로운 교회법의 조문을 가결시켰는데, 그것은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을 위한 교회에서의 종교수업 도입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모든 교구에서 교회적인 가르침을 실시하는 것인데, 가능한한 학교의 시간표에 포함되는 시간에 주 1회 실시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자는 교회의 교구에 의해서 정해지고, 보수가 지급되며, 그들의 교육과 재교육 역시 교회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²⁵⁾

7학년에서 9학년(우리나라로 치면 중학생 연령)들은 일반적으로 학교가 정한 국교회(Landeskirche)에 속한 목사에게 의해 “성경이야기와 윤리” 과목의 수업을 받는다. 이 수업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최근에 구교에서는 중학생 연령의 학생들을 위해 구교 자체의 종파적 수업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신교와는 달리 재정의 지원을 국가에서 받지 못하고 있다.⁽²⁶⁾

4) 요약

이와같은 묘사에서 발견되는 것은 스위스에는 학교 종교수업에 관한 다양한 법적 형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른 대학의 종교교육학 교수인 클라우스 베게나스트(K. Wegenast)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요약해 보건대, 스위스에서의 종교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각 칸톤들의 법적인 구조, 종교교육학적인 이론형성, 각각의 지역들의 교회적인 기질 그리고 종교수업에 대한 친근감의 차이를 보이는 학교의 분위기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²⁷⁾

이상과 같이 서술된 각 칸톤들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종교수업에 관한 법적 상황은 한편으로는 각각의 칸톤의 종교적 상황 - 신, 구교간의 관계 - 과 교회와 국가간의 관

(23) 이 명칭은 학교교육 과목 중에서 생물학을 주로 가르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가끔 이 용어는 Gemeinschaftskunde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과목은 사회학, 역사, 지리 등을 포괄하는 교과목이다. 여기서는 후자에 가까운 의미로 쓰이며 우리말로 좋은 번역이 없어 그대로 쓰기로 한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을 포괄적으로 접근하려는 용어로 보인다. K. Wegenast, a.a.O., 132.

(24) H. Eggenberger, a.a.O., 430.

(25) 제8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교회의 교구는 국민학교의 어린이를 위하여, 교회적인 수업을 시행하는데, 이 수업은 어린이로 하여금 교회의 근본적인 삶의 형식과의 접촉을 이루게 하고, 이를 통하여 어린이가 교회와 더욱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수업은 최소한 30시간으로 한다. 또한 이 수업은 학교에서의 ‘성경이야기’ 수업과 주일학교에서의 가르침과를 통합 조정시켜야 한다.” Vgl. Kirchenbote 20 (1988), 7(1989).

(26) Vgl. Ebenda.

(27) K. Wegenast, a.a.O., 125.

계규정에서 기인되고 있다. 스위스의 각 칸톤은 그들의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각각 독특한 성격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독특성들은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수업을 위한 법적 규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칸톤의 법적인 상황은 각 칸톤의 전통적인 다양성을 통해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스위스의 각 칸톤에서 보여주는 종교수업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은 무엇보다도 종교수업의 “상황관련성(Situationenbezogenheit)”을 잘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스위스 내의 종교수업의 다양한 양상은 종교수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 줌으로 이 주제에 관한 많은 자료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겠다.

III. 독 일

1. 법적 상황

독일에서의 종교수업의 제도적인 위치는 법적인 규정에서 밝혀지는데, 종교수업과 관련된 헌법(기본법)은 제7조로 다음과 같다.

“1) 모든 학교제도는 국가의 감독아래 있다.

2) 교육친권자는 자녀들의 종교수업 참여의 여부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3) 비종교학교(bekenntnisfreie Schule)에서의 예외를 제외하고, 종교수업은 공립학교에서 정규 교과목이다. 종교수업은 국가의 감독권과는 관계없이, 종교단체(Religionsgemeinschaft)의 기본원리들에 따라(일치하여) 실시된다. 어떠한 교사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종교수업을 가르칠 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²⁸⁾

바이마르 헌법이 약간 수정된 형태로 만들어진(146~149조) 이 헌법의 규정은⁽²⁹⁾ 학교교육을 위한 국가적인 책임과, 그들의 구성원에게 대한 종교적 교육에 대한 교회의 관심사이의 타협점이 드러나고 있다. 종교수업에 대한 이러한 법적인 규정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그 의미를 또한 명료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다시 말하면 독일에서의 종교수업은 다양한 교육학적, 신학적 견해와 마찬가지로, 법적이며, 정치적인 해석을 위한 여지를 제공하고 있음이 감지된다.⁽³⁰⁾

특히 이 조문에서는 종교수업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점이 주목된다.

(28) 제7조 3항의 첫 문장은 Bremen과 Berlin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29) Weimar 헌법(1919) 제149조를 원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Der Religionsunterricht ist ordentliches Lehrfach der Schulen mit Ausnahme der bekenntnisfreien (weltlichen) Schulen. Seine Erteilung wird im Rahmen der Schulgesetzgebung geregelt. Der Religionsunterricht wird in Übereinstimmung mit den Grundsätzen der betreffenden Religionsgemeinschaft unbeschadet des Aufsichtsrechtes des Staates erteilt. Die Erteilung religiösen Unterrichts und die Vornahme kirchlicher Verrichtungen bleibt der Willenserklärung der Lehrer, die Teilnahme an religiösen Unterrichtsfächern und an kirchlichen Feiern, und Handlungen der Willenserklärung desjenigen Überlassen, der über die religiöse Erziehung des Kindes zu bestimmen hat. Die theologischen Fakultäten an den Hochschulen bleiben erhalten.” D. Stoodt, a.a.O., 105.

(30) W. Steck, Der Religionsunterricht in der Schule, in: Wintzer, F.(Hrsg.), Praktische Theologie, Neukirchen-Vluyn 1985, 2. Aufl., 151.

첫째는, 종교수업은 공립학교에서 “정규과목”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종교수업은 “종교단체의 기본원리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정규과목으로서의 종교수업은 객관적으로 규정된 것이지, 개인적으로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교사와 학생은 종교수업을 거부할 수 있다.

2. 종교수업의 양면성

공립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행해지는 종교수업은 국가적인 학교 시스템의 한 구성요소이다. 종교수업은 고유하고도, 구분된 수업의 과목으로 학교의 필수적인 과목에 속한다. 그것은 다른 과목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손상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헤프(Hepp)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종교수업이 ‘정규과목’이라면, 그것은 ‘모든 시간의 교과목’으로서, 하나의 장식물 정도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것은 적합한 시수를 가지고, 다른 필수과목들과의 동등한 자격으로 시간표에 나타나야 한다.”⁽³¹⁾

또한 헌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학교제도는 “국가의 감독 아래” 있기 때문에 국가는 학교의 행사자(Schulträger)로서 종교수업의 실시를 위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종교수업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학교와 국가의 일이지, 교회나 종파나 종교단체의 일은 아니다.”⁽³²⁾ 국가는 물론 종교수업의 실시자이다. 국가는 종교수업의 실시를 위해 발생하는 필요한 설비와 교사를 제공하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헌법에서 보증해 주는 공립학교에서의 교과목의 기준에 있어서의 동등성은 또한 다음과 같은 것을 조건지어 준다. 즉 “이 과목에서도 다른 동등한 필수과목과 마찬가지로 성적평가를 할 수 있으며”⁽³³⁾, 그것은 성적표에 나타나고 기본적으로 진급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³⁴⁾

이상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정규과목으로서의 종교수업은 일반적으로 필수과목이다. 그러나 헌법(7조 3항)은 그 거부의 가능성을 보증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4조)에서 나타난 법적 원리로부터 종교수업의 “자발적 성격(Freiwilligkeitscharakter)”이 결국 나타나게 된다. 헌법은 교육친권자는 그들의 자녀들이 종교수업에 참여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정된 나이를 넘어서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종교수업에 참석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³⁵⁾ 이렇게 독일에서의 종교수업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31) J. Hepp, Begründung des Religionsunterrichts, in : Weidmann, F. (Hrsg.), Didaktik des Religionsunterrichts, Donauwörth 1979, 58.

(32) W. Geiger, Die rechtliche Stellung des Religionsunterrichts in der Schule, in : Wegenast, K.(Hrsg.), Religionsunterricht-wohin?, Gütersloh 1971, 83.

(33) G. Baudler, Der Religionsunterricht an der deutschen Schule, München 1971, 35.

(34) Das hat das Urteil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 vom 6. Juli 1973 endgültig geklärt.

(35) 종교수업에 대한 참여를 결정하는 일은 어린이의 종교적 교육에 관한 연방과 주 정부법에 의해, 교육친권자나 혹은 종교적 성숙에 도달한 어린이 자신에게 주어진다. 1921년 7월 15일에 만들어진 어린이의 종교적 교육에 관한 법 제5조에 의하면, 만 14세는 능동적인 종교적 성숙기로, 그리고 만 12세는 수동적 종교적 성숙기로 규정되어 있다. 조문은 이렇게 되어있다. “만 14세가 되면 어린이는 어떤 종교적 종파를 보유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어린이가 만 12세가 되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지금까지 양육된 종파와는 다른 종파 속에서 양육될 수는 없다.” Bayern, Rheinland-Pfalz und Saarland에서는 18세를 학생 스스로가 결단할 수 있는 나이로 규정하고 있다.

3. “종교단체의 기본원리들”

헌법의 규정은 종교수업을 교육적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규정은 다른 과목들과는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위치를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종교수업의 교회와의 관계를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의 조문은 “종교수업은 국가의 감독권과는 관계없이, 종교단체(Religionsgemeinschaft)의 기본원리들에 따라 실시된다.”고 밝히고 있다.

법 조문에서 “종교단체(Religionsgemeinschaft)의 기본원리들에 따라(일치하여) 실시된다”는 표현은 그리 단순히 넘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좀 더 자세한 내용적 해명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헌법의 규정은 인사적인 관점과 객관적인 관점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³⁶⁾ 인사적인 면에서 볼 때, 여기서 요청된 “일치”는 종교단체에게 교사진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그 영향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보장된다. 여기에는 종교교사의 교회적인 전권위임이라는 개념이 속해 있다. 객관적인 면에서 볼 때, “일치”에 관한 조문은 종교단체에게 종교수업의 목적과 내용을 정하는 권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무가 맡겨지는 것이다. 그 밖에 “기본원리들”에 대한 규정권도 학교당국자나 개별적인 교육친권자가 가진 것이 아니고, 교회당국에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종교단체의 기본원리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게 갈라진다. 법률가들까지도 그 해석을 다양하게 내리고 있다.⁽³⁷⁾ 법률가들의 다양한 해석은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해석 역시 교회와 신앙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³⁸⁾ 법률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교의적인 신앙원리와 계명의 최소의 분량’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³⁹⁾ 가톨릭 교회의 편에서 “기본원리”를 규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에는 명확한 교의적, 윤리신학적인 조직이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신교에서는 이와는 달리 어떤 권위있는 교직(Lehramt)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것을 규정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⁴⁰⁾ 이와같은 상황에서 EKD(독일개신교회)는 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종교수업에 관한 헌법적인 문제에 대해 명백히 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이 위원회는 1971년 7월 7일에 다음과 같은 “종교단체의 기본원리들”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였다.

- 1) “종교단체의 기본원리들”은 바이마르 헌법의 의미에서 볼 때, 원래 “긍정적인 교의나 도그마”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그 당시의 시점에 부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복음적이며 신학적인 학문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의미는 헌법의 텍스트 속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기본원리들”이라는 개념은 현재의 교육학적 인식과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해석을 필요로 한다.

(36) Vgl. J. Hepp, a.a.O., 59.

(37) Vgl. dazu vor allem : A. Läßle, Der Religionsunterricht 1945~1975, Aschaffenburg 1975; E. Gross, Die wichtigsten Gerichtsurteile zum Problem “Religion in der Schule”, Kevelaer 1975; F. Rickers, Religionsunterricht “in Übereinstimmung mit der Grundsätzen der Religionsgemeinschaften”?, in : Der Evangelische Erzieher 23 (1971), 37ff.

(38) Vgl. J. Hepp, a.a.O., 60.

(39) K. Frör, Grundriss der Religionspädagogik, Konstanz 1983, 2. Aufl., 178.

(40) Vgl. K. Wegenast, Kirche und Schule, in : Böcker, W.(Hrsg.), Handbuch religiöser Erziehung, Bd. I, Düsseldorf 1987, 30.

2) 오늘의 신학적이며, 교회적인 시각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이해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리들을 통해서 특징지어질 수 있다.

- a. 기독교 신앙의 전달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을 통해서, 또한 이러한 증거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어왔는가를 고려하면서 결정되는 것이다.
- b. 신앙의 진술과 고백은 그것의 역사적인 관련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또한 현재 속에서 새로운 해명을 요구한다.
- c. 기독교 신앙의 전달은 교회의 증거와 봉사와의 관련 속에서 보존되어야 한다.

3)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적 증거에 집착한다는 것은 복음적인 이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포함한다. 즉, 교사는 신앙 내용의 주석과 전달을 학문적인 근거와 양심의 자유 속에서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종교단체의 기본원리들”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포함한다. 즉 자신의 고유한 시각과 생각을 검증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이해하며, 또한 더 큰 공동성에 도달하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의 다양한 형태들(교회, 교파, 고백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다. 또한 비기독교적인 종교들이나 비종교적인 확신들과의 대결도 필요하다.

5) “종교단체의 기본원리들”의 신학적 이해는 수업의 교육적인 구성과도 일치하는데, 수업은 해석의 능력을 전달함과 동시에, 대화와 공동작업을 연습하는 것이다.⁽⁴¹⁾

이상과 같은 “종교단체의 기본원리들에 따라”라는 표현에 대한 해명은 다음과 같은 주목할만하며, 토의할 가치가 있는 일련의 관점들을 포함하고 있다.⁽⁴²⁾

- 성경적 증거와, 그 영향사를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이해를 위한 노력의 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적 증거에 집착한다는 것은 교사가 성경을 다룸에 있어서 학문적인 작업으로서 만이 아니라, 그의 양심의 자유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닌다는 뜻이다.
- 기독교 신앙의 전달은 구체적인 교회적 실천과 체험가능한 현실의 연관관계와 관련된다.
-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질문을 취급하는 것은 역사와 현재 안에서, 또한 다른 신앙적 확신들과의 대화 속에서의 기독교적인 삶의 다양한 형태를 향함으로써 수행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EKD회의의 정의는 의무적인 성격의 것은 아니다. 또한 EKD의 선언은 어떤 측면에서는 결합의 요소도 보이고 있는데, 예를들면 정의와 화해의 메시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적 증거를 묘사하는 일 등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적인 종교수업에서 이루어야 하는 내용적이고, 방법론적인 기본원리를 언급함으로써 함의점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모으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⁴³⁾

(41) Abgedruckt in : Stellungnahme des Rates der EKD zu verfassungsrechtlichen Fragen des Religionsunterrichts. Vom 7. 7. 1971, in : Kirchenkanzlei der EKD (Hrsg.), Die evangelische Kirche und die Bildungsplanung, Gütersloh 1972, 119ff, bes. 124.

(42) G. Adam/R. Lachmann, Begründung des schulischen Religionsunterrichts, in : ders.(Hrsg.), Religionspädagogisches Kompendium, Göttingen 1984, 73f.

(43) H. Schmidt, Religionsdidaktik. Ziele, Inhalte und Methoden religiöser Erziehung in Schule und Unterricht, Bd. I, Stuttgart 1982, 23.

이러한 연관관계 속에서 신교와 구교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종교수업은 신, 구교에 따라 나뉘어 실시된다. 그러나 특수한 조건 아래서 각 주의 규정에 따라 학생들은 때때로 다른 종파의 종교수업에 참석할 수도 있으며, 교회에 속하지 않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한편에서 볼 때, 헌법의 법적인 규정은 신교나 구교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구교의 결합성”을 형식화하였으며, 그래서 EKD의 회의의 견해에서는 4, 5절에서 “기독교의 공동성”을 언급하고 있다. EKD선언은 종교수업의 교육적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대화에의 훈련과 공동작업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신, 구교의 기본원리들과 수업상황 사이의 긴장은 단순히 하나의 형식을 통해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 속에서 풀어져 나가야 한다고 보여진다.⁽⁴⁴⁾

4. 종교수업과 국가의 중립성

여기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수업과 국가의 중립성과의 관련문제이다. 헌법 제7조 3항의 내용적 과급효과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기본적인 규정의 삭제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요구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세계관적이며 종교적인 중립성이 상처를 입는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많은 사람들은 국가가 모든 세계관적이고, 종교적인 영향들로부터 학교를 멀리하게 할 때만 중립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의 중립성이란 무엇보다도 자유보장적이며, 자유를 안전하게 하는 원리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캄펜하우젠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따라서 중립성이란 세계관적인 어떤 것들을 도외시하거나, 혹은 이 나라의 주민들이 기독교인, 무신론자, 막스주의자 혹은 여호와의 증인 등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사실에 대해 법적으로 눈을 감아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는 그것을 인식해야 하며, 그의 시민들의 다양한 동기화들을 공동체적인 행동으로 고려해야 한다. 즉, 국가적인 기구들 속에서 자유의 행사를 보장하고, 그것을 강화하며, 세계관적인 것들을 단지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하지 않는 것이다.”⁽⁴⁵⁾

물론 국가가 세계관적인 혹은 종교적인 어떤 한 견해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중립적 자세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양한 주민들의 세계관과 종교적 견해들이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으며, 그들의 소리를 발할 수 있으며,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은 중립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중립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립성이란, 아무 것과도 관계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보다는, 오히려 종교수업이라는 영역에서 종교단체에게 교수내용의 규정을 넘겨줌으로, 종교단체로 하여금 공립학교에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계관적 중립이란,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인정하며, 그들을 포용한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은 그들의 자녀들을 종교적으로 교육시키기를 원하는 많은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이다.⁽⁴⁶⁾

(44) G. Adam/R. Lachmann, a.a.O., 74f.

(45) Ch. Link, Religionsunterricht im pluralistischen Staat, in : Exeler, A.(Hrsg.), Umstrittenes Lehrfach Religion, Düsseldorf 1976, 43f.

(46) K. Wegenast, a.a.O., 30.

또한 실제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중립이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사회의 제도나 교육에는 사람들의 세계관적이며, 종교적인 사고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사실이 더 명백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만약 종교적인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공공적인 영역으로부터 추방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들의 헌법적 규정의 자유와 중립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종교가 학교로부터 도외시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의 고유한 과업의 수행에도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교수업을 학교에서의 과업과의 연관관계 속으로 밀어넣는 것은 가능하며, 또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⁴⁷⁾

5. 대표적인 세 지방정부의 예

1) 바이에른(Bayern)⁽⁴⁸⁾

바이에른 주에 있어서의 신교는 디아스포라의 상황에 있다. 휘켄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바이에른 주는 가톨릭은 아니다. 그러나 소수상황이 종교수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곳에서는 1921년까지는 양 교회의 불균형한 법적 상황이 반영된다. 가톨릭 교회(die katholische Kirche)는 있으나, 단지 개신교교회연합(protestantische Gesamtgemeinde)이 있었을 뿐이었다.”⁽⁴⁹⁾ 비로소 1921년에 이르러 “복음주의 - 루터파 교회(Evang. - Luth. Kirche)”라는 명칭이 외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가톨릭 교회 속에 섞여 있는 약한 복음주의 교회(개신교를 말함)는 1945년 이후에 큰 정체성의 문제를 가져왔다.

바이에른의 헌법은 교회를 공적인 영역에서도 교육의 담당자(Bildungsträger)로 분명히 명명하고 있다(133조). 물론 이 곳에서 종교수업은 정규과목이며, 주당 2시간 정도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⁵⁰⁾ 학교에서의 종교수업에 대한 감독과 지도는 교회에게 보장되며, 가능한 한 신, 구교가 섞임이 없이 반을 구성하고, 교사진은 신, 구교 각각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며, 종교수업은 학교의 교사들에 의해서 스스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종교수업의 내용은 배타적으로 교회의 결정 아래에 놓여있으며, 종교수업의 실시는 교회적인 전권 위임을 전제로 한다. 한 마디로 바이에른 주에서는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 속에서 종교수업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베르린(Berlin)⁽⁵¹⁾

베르린에서는 교회가 학교시간의 밖에서 학생들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청소년들을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장한다. 1945년 이후로, 종교수업은 정규적인 교수과목으로서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으며, 그래서 종교수업은 “교회의 일”로 생각되었다. 국립(공립)학교는 무상으로 수업의 장소를 제공하며, 정규시간 이외에 1주 2시간의 종교수업의 시간을 명시하며, 교회가 위임한 교사들에 의해서 학교의 건물에서 실시된다. 수업을 위한 책임, 즉 감독과 가르치는 자의 제공 등 모든 것은 교회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3) 바덴 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종교수업은 국가와 교회의 공동의 책임 아래 있다. 헌법 제7조 3항의 “국가적 감독권”은 주정부법에서는 “국가의 일반적인 감독권”으로 해석된다(주정부법 18조). ‘정규과목’(헌법 제7조 3항)으로서의 종교수업은 분명히 국가적인 행사이다. 여기에 덧붙여 주정부법은 종교수업은 ‘종교단체에서 위임된자’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감독되는데, 여기서 그 위임된자들이 국가의 공무원인지 혹은 교회의 사역자인지는 분명하지 않다.⁽⁵²⁾

종교수업의 원리들은 교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곳에서는 종교수업을 위한 교수 계획과 학습자료에 대한 허가는 종교단체에게 주어져 있다. 또한 이 곳에서의 종교수업은 국가에서 임명받은 교사만이 아니라, 성직자들에 의해서도 가르쳐진다. “바덴-뷔르템베르크의 목사들이 다양한 학교에서, 다양한 단계에서 종교교육이라는 과목을 가르칠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오래된 확실한 전통이다. 모든 교구목사들은 이를 위한 급료를 지불받는 일이 없이, 그의 봉사위임의 틀 안에서, 종교수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⁵³⁾

4) 요약

독일에서의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종교수업에 대한 규정은 스위스의 것보다 유사하다. 즉 바이에른은 상트 갈렌과, 베르린은 바젤과, 바덴-뷔르템베르크는 쥐리히와 유사하다. 이러한 차이들은 한편으로는 지역적으로 신교가 강한가, 혹은 구교가 강한가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지도자의 영역에, 그의 종교를”(“Wessen Herrschaftsgebiet, dessen Religion”)이라는 원리에 의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종파적 전통의 배경 외에, 증가하는 도시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신, 구교 혹은 종교적인 섞임을 통한 종교의식의 변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법적인 상황을 보면,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수업은 “정규과목”으로서, 그 위치가 확고함을 보여준다. 이것은 아마도 나치시대의 고백교회의 역할의 결과로 보여진다. 학교에서의 종교수업의 법적위치가 강한 것과 함께, 이 곳에서의 종교수업 역시 언제나 보편적인 세속화의 과정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47) A. von Campenhausen, Der Religionsunterricht im weltanschaulich neutralen Staat, in : Esser, W. (Hrsg.), Zum Religionsunterricht morgen, Bd. I, München 1970, 94.

(48) Vgl. K. Fikenscher, Religionsunterricht in Bayern, in : Biehl, P./Bizer, C./Heimbrock, H.-G./Rickers, F.(Hrsg.), Jahrbuch der Religionspädagogik (JRP), Bd. III (1986), Neukirchen-Vluyn 1987, 209ff.

(49) K. Fikenscher, a.a.O., 209.

(50) K. Fikenscher, a.a.O., 210.

(51) Vgl. H.-H. Wilke, Den Religionsunterricht nicht auf die >Sakristei< beschränken, aber... Anmerkungen zum evangelischen Religionsunterricht in Berlin (West), in : Biehl, P./Bizer, C./Heimbrock, H.-G./Rickers, F.(Hrsg.), Jahrbuch der Religionspädagogik (JRP), Bd. II (1985), Neukirchen-Vluyn 1986, 215ff; D. Stoodt (Hrsg.), Arbeitsbuch zur Geschichte des evangelischen Religionsunterrichts in Deutschland, Münster 1985, 99f.

(52) O. Basse, Religionsunterricht in Baden-Württemberg, in : Biehl, P./Bizer, C./Heimbrock, H.-G. /Rickers, F.(Hrsg.), Jahrbuch der Religionspädagogik (JRP), Bd. I (1984), Neukirchen-Vluyn 1985, 184ff.

(53) O. Basse, a.a.O., 186.

IV. 결 론

이상과 같은 법적 묘사들은 종교수업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바, 이러한 묘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들이 나타난다.

- 1) 원칙적으로 볼 때, 유럽에서의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수업의 위치는 아주 견고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며, 또한 유럽에서의 종교문제를 대하는 다양한 접근방법은 무엇보다도 종파적인 구성비와 깊이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주민들이 개신교도인가, 혹은 로마교에 속하는가, 혹은 주민들의 개신교와 로마교의 뒤섞임이 확장되고 있느냐에 많이 관계된다는 것이다. 또한 스위스와 독일에서의 법적인 규정과 실천의 다양성은 전체적으로 상황에 알맞는 규정을 유동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 2) 앞의 논의에서 2차 세계대전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독일에서는 2차대전이 큰 역할을 하였는데, 국가주의에 대한 고백교회의 대항을 근거로한 신뢰심의 증가는 그 이후에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수업의 법적 위치를 견고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스위스는 대전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2차 세계대전 이래로 변화된 사회적이며 시민적인 문제에 대한 법의 적응에 근거하여, 다양한 규정들이 생기게 되었다.
- 3) 종교수업에 대한 저항적 요인으로는 신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의 보장 등이 작용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근대적 경향들, 즉 세속화와 도시화의 발전, 세계관의 다원화 등은 유럽에서의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느슨하게 만드는 일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현대화되고 다원화된 국가 속에서 존재하면서, 신앙적으로 중립을 표방하는 공립학교에서 종교수업이 어떤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하는 질문으로 이끈다.
- 4) 유럽에서의 법적 기초는 종교수업의 틀을 규정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면에서 지원적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수업을 위한 법적 기초를 결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공립학교는 단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종교적인 견해들을 의도적으로 배타시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더욱 심도깊은 논의를 통하여,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수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5) 우리나라보다 더 다원화되고, 세속화된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도 '사회 속에서의 종교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물론 그들의 오래된 기독교적인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들이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종교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수용하려는 것은 앞으로 '공적인 영역에서의 종교의 위치'에 관한 우리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도서 목록>

- Adam, G./Lachmann, R.(Hrsg.), Religionspädagogisches Kompendium, Göttingen 1984.
- Basse, O., Religionsunterricht in Baden-Württemberg, in : Biehl, P./Bizer, C./Heimbrock, H.-G./Rickers, F.(Hrsg.), Jahrbuch der Religionspädagogik (JRP), Bd. I (1984), Neukirchen-Vluyn 1985, 184ff.
- Baudler, G., Der Religionsunterricht an der deutschen Schule, München 1971.
- Bräm, W. K., Religionsunterricht als Rechtsproblem im Rahmen der Ordnung von Kirche und Staat, Zürich 1978.
- Campenhause, A. von, Der Religionsunterricht im weltanschaulich neutralen Staat, in : Esser W.(Hrsg.), Zum Religionsunterricht morgen, Bd. I, München 1970, 80ff.
- Dommann, F., Religionsunterricht in der Schweiz und schweizerische Lehrmittel, in : Religionspädagogische Beiträge, 18 (1986), 137ff.
- Eggenberger, H., Religionsunterricht in der Schweiz, in : Der Evangelische Erzieher, 1975, 425ff.
- Fikenscher, K., Religionsunterricht in Bayern, in : Biehl, P./Bizer, C./Heimbrock, H.-G./Rickers, F.(Hrsg.), Jahrbuch der Religionspädagogik (JRP), Bd. III (1986), Neukirchen-Vluyn 1987, 209ff.
- Frör, K., Grundriß der Religionspädagogik, Konstanz 1983, 2. Aufl.
- Geiger, W., Die rechtliche Stellung des Religionsunterrichts in der Schule, in : Wegenast, K.(Hrsg.), Religionsunterricht - wohin?, Gütersloh 1971, 79ff.
- Gysel, W., Zur Situation des evangelischen Religionsunterrichts im Kanton Zürich, Zürich 1968.
- Hepp, J., Begründung des Religionsunterrichts, in : Weidmann, F. (Hrsg.), Didaktik des Religionsunterrichts, Donauwörth 1979, 46ff.
- Link, Ch., Religionsunterricht im pluralistischen Staat, in : Exeler, A.(Hrsg.), Umstrittenes Lehrfach Religion, Düsseldorf 1976, 21ff.
- Läpple, A., Der Religionsunterricht 1945~1975, Aschaffenburg 1975.
- Rickers, F., Religionsunterricht "in Übereinstimmung mit der Grundsätzen der Religionsgemeinschaften"?, in : Der Evangelische Erzieher 23 (1971), 37ff.
- Schmidt, H., Religionsdidaktik. Ziele, Inhalte und Methoden religiöser Erziehung in Schule und Unterricht, Bd. I, Stuttgart, 1982.
- Steck, W., Der Religionsunterricht in der Schule, in : Wintzer, F.(Hrsg.), Praktische Theologie, Neukirchen-Vluyn 1985, 2. Aufl., 150ff.
- Stoodt, D., (Hrsg.), Arbeitsbuch zur Geschichte des evangelischen Religionsunterrichts in Deutschland, Münster 1985.
- Wegenast, K., Der Religionsunterricht in der Schweiz, in : Religionspädagogische Beiträge, 9 (1982), 124ff.
- Wegenast, K., Kirche und Schule, in : Böcker, W.(Hrsg.), Handbuch religiöser Erziehung, Bd. I, Düsseldorf 1987, 22ff.
- Wilke, H.-H., Den Religionsunterricht nicht auf die >Sakristei< beschränken, aber... Anmerkungen zum evangelische Religionsunterricht in Berlin (West), in : Biehl, P./Bizer, C./Heimbrock, H.-G./Rickers, F.(Hrsg.), Jahrbuch der Religionspädagogik (JRP), Bd. II (1985), Neukirchen-Vluyn 1986, 215ff.